

#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4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4월 3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4조 및 제24조 등에 따라 서울시청 직원 자녀의 육아 지원으로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치하여 운영중인 시설로서,
- 나.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
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4번지
- 시설규모 : 지하 1층 ~ 지상 4층(연면적 2017.72㎡)
- 인가일 : '95. 3. 6.(2000.3.3. 현 소재지로 확장 이전)



## 나. 운영개요

- 정·현원 : 정원 195명, 현원 163명('20. 3월)
- 교 직 원 : 총 42명
  - 원장, 원감, 교사 32, 간호사, 영양사, 취사원 4, 사무원 등 2명
- 입학자격 : 만0~만5세 영유아 및 초등학생

## 다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2년 3개월('20. 10. 1. ~ '22. 12. 31.)
  - ※ 조례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1.1.~12.31.로 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('14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)
- 위탁업무
  - 어린이집 운영전반(영유아 보육 및 초등학생 방과후반 운영)
  - 시설·장비·부품의 구매 및 관리
 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의 수행
- '20년 예산 : 1,500백만원(보육료 수입 등 별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(한솔어린이보육재단)

## 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및 재계약 추진근거
 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
 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12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1차 : '99.01월~'01.07월(삼성복지재단 및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)
  - 2차 : '01.08월~'08.10월(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)
  - 3차 : '08.11월~'11.09월(학교법인 숙명학원)
  - 4차 : '11.10월~'14.09월(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)
  - 5차 : '14.10월~'17.09월(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)
  - 6차 : '17.10월~'20.09월(한솔어린이보육재단)

## 마. 민간위탁(재계약) 필요성

- '17.10월부터 현재까지 약2년간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운영중으로, 짧은 위탁기간임에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최우수 등급인 "A 등급"으로 통과('19.10월)하여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하였으며,
- '18.06월 어린이집 리모델링, '19.05~06월 스프링클러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도 휴원 없이 인근 건물을 활용해 대체보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
- 또한 레지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유아 중심의 중점보육프로그램 운영,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등 바람직한 보육철학 정착을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영유아보육법 제14조, 제24조

제14조(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6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('19.12.13.)

○ 제1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'적정' 의결('20.1.29.)

○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'적정' 의결('20.3.10.)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후생복지팀 최영하 (☎2133-5771)